

식품위생법 개정건의(안)

-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[별표 17] 6. 식품접객업자(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)의 준수사항 중 아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[별표 23] 행정처분 기준 II.개별기준 3.식품접객업 10항에 아목에 대한 처분기준을 추가함

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
		1차위반	2차위반	3차위반
10.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.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(별표 17 제6호 아목 ·자목·파목·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의 위반으로서 2) 별표 17 제6호 아목 ·다목·타목 5) 또는 머목을 위반한 경우	법 제71조 및 법 제75조	영업정지 2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